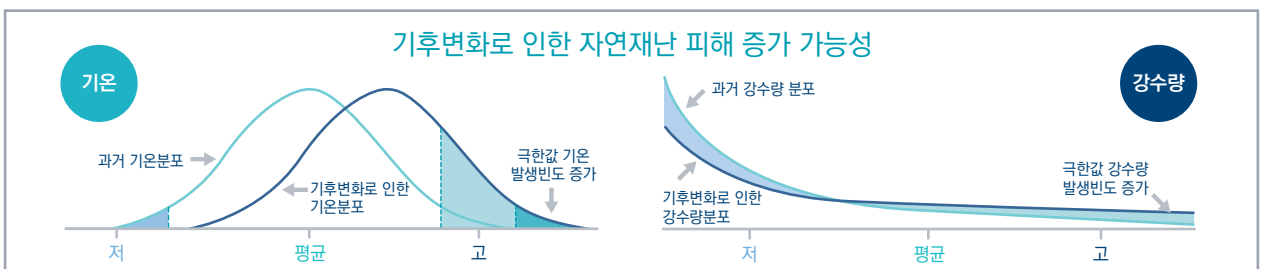


#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기후변화의 영향, 재난 범위의 확대 등의 재난관리 환경 변화, 재난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등으로 관련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재정소요는 8,57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진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 인상,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을 규정한 개정안 및 제정안이 다수 발의 되었다. 지진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인상은 연평균 190억원, 지진피해 지역의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은 연평균 43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영향, 재난 범위의 확대 등으로 재난관리 정책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현안과 그에 따른 재정소요 분석 필요



\*주: [http://reuteams.pbworks.com//f/1495046536/CCSP\\_SAP\\_part.jpg](http://reuteams.pbworks.com//f/1495046536/CCSP_SAP_part.jpg)를 참고하여 그림

# I. 재난피해 지원 제도 개요 및 현안

## 1. 재난피해 지원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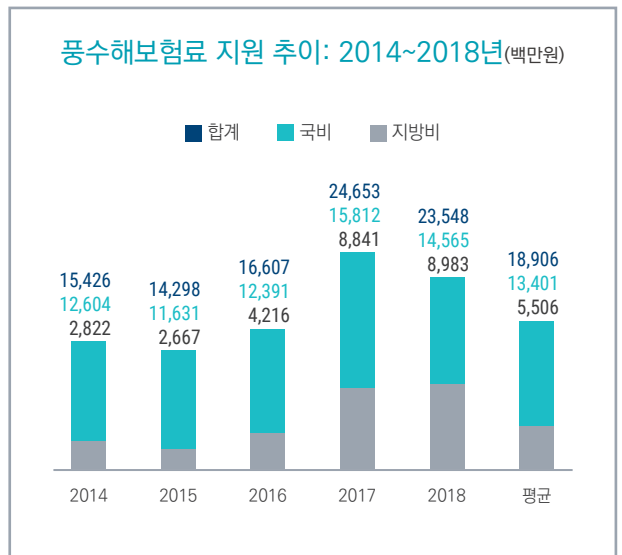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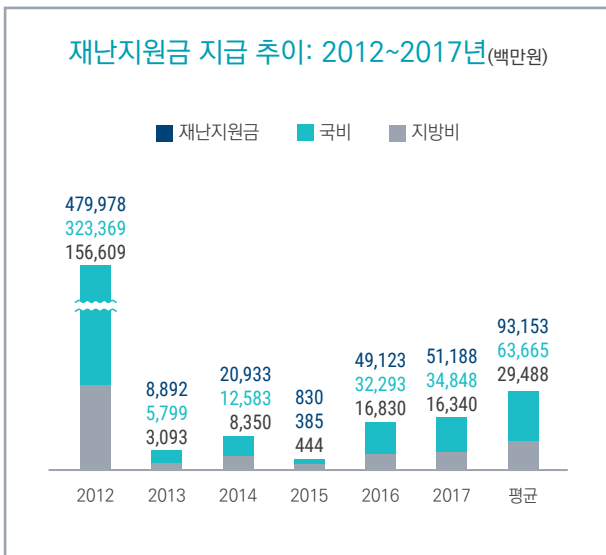
이재민, 사유시설 등에 대한 재난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은 직접지원, 간접지원, 재난정책보험으로 구분  
 재난피해 지원 사업을 비롯한 재난관리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

| 재난피해 지원 방식 |                                      |                                  |
|------------|--------------------------------------|----------------------------------|
|            | 제도                                   | 재원                               |
| 직접지원       | 재난지원금                                | 국비·지방비<br>(일반적으로 70:30)          |
|            | 이재민 구호                               |                                  |
|            | 의연금(적립방식)                            | 민간                               |
| 간접지원       | 연금보험료 납부유예,<br>복구자금 용자 및<br>공과금 감면 등 |                                  |
| 재난정책보험     | 풍수해보험 등                              | 보험료 일부를<br>국비·지방비 지원<br>(34~92%) |

| 재난관리 재정의 구성   |   |
|---|---|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 <b>일반회계</b>   | <b>일반회계</b>   |
| ·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br>재난관리 관련 세부사업 수행                                 | · 자체사업<br>· 지방교부세(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br>·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
| <b>특별회계</b>   | <b>교육재정교부금</b>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br>· 교통시설특별회계<br>·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br>· 환경개선특별회계         | ·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br>· 특별교부금의 10% 재난안전관리 배정                 |
| <b>기금</b>   | <b>기금</b>   |
| · 응급의료기금<br>·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br>· 국민건강증진기금<br>· 수산발전기금<br>· 방송통신발전기금 | · 재난관리기금<br>· 재해구호기금                                      |

## 2.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현황 및 이슈

재난지원금은 평균 932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규모는 평균 189억원 소요  
 주요 이슈로는 재난지원금 인상,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과 같은 재난피해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음



## II. 주요 현안에 대한 재정소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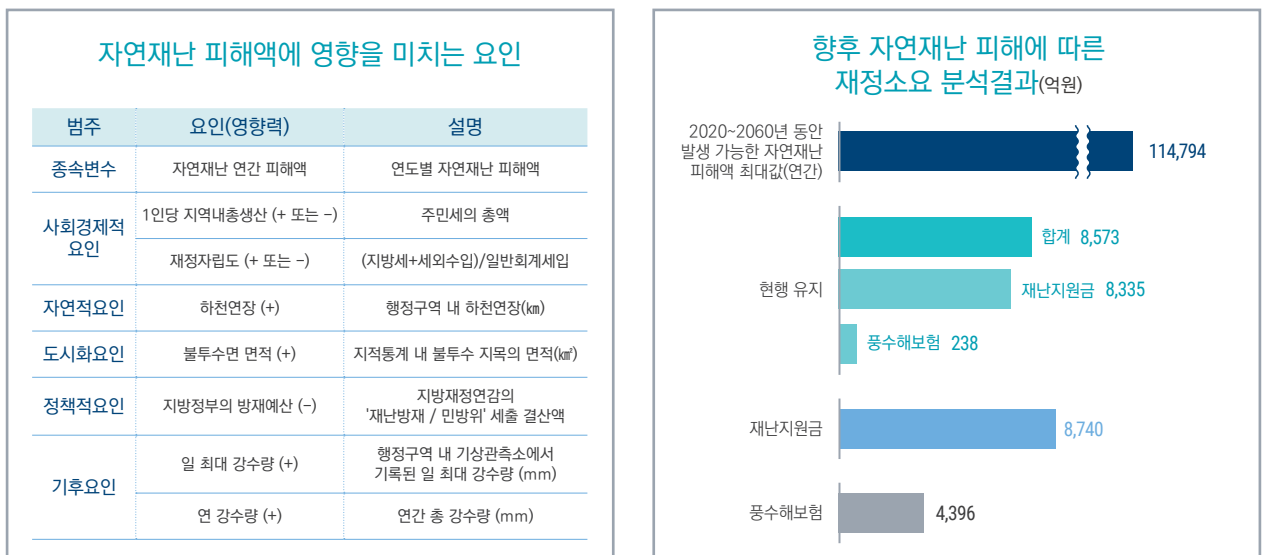
### 1. 분석 개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액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재난피해 지원 제도별 재정소요를 분석  
재난피해 지원 정책 방안별(재난지원금 인상,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 재정소요를 분석



### 2. 향후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재정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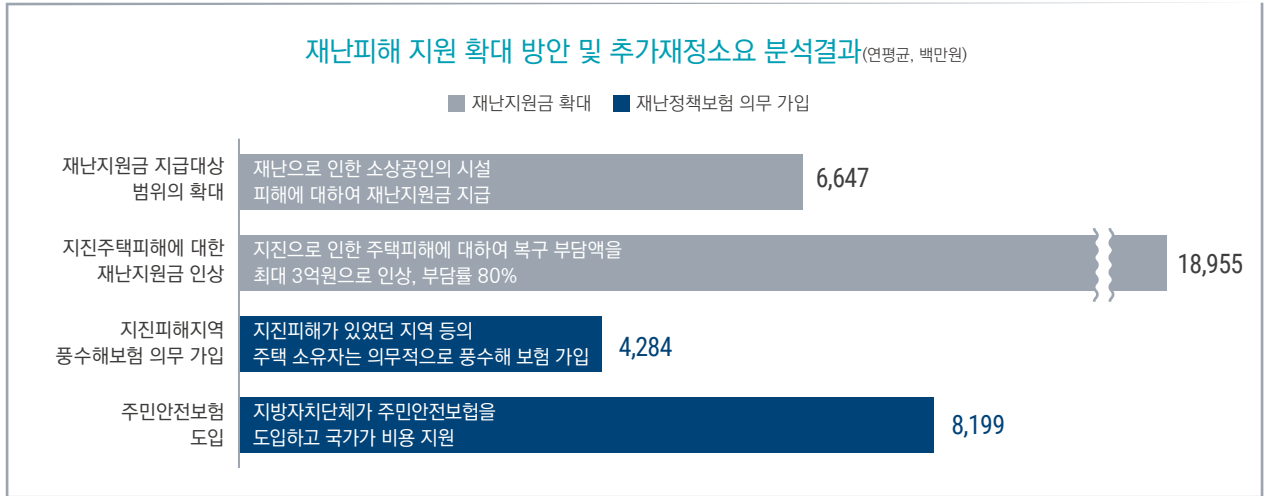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예상되며 재정소요는 현행 수준의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가입률 유지 시 8,573억원으로 추계



\*주: Lee Miyeon, Hong Jongho, Kim Kwang Yul(2017), Estimating Damage Costs from Natural Disasters in Korea, Natural Hazards Review Vol.8, No.4.의 모형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거시경제자료(GDP 등), 통계청 인구자료 등을 갱신·적용하여 추정

### 3. 재난피해 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는 연평균 66억 4,700만원, 지진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인상 시 연평균 189억 5,500만원, 지진피해지역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시 연평균 42억 8,400만원, 주민안전보험 가입은 연평균 81억 9,900만원으로 추계



### 4. 시사점

2020~2060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 가치)이고, 이는 과거 최대 피해액 대비 1.4배 규모이며, 추정된 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금 8,335억원은 최근 10년 연평균보다 약 9배 많아 재난피해 지원 관련 재정소요가 증가할 가능성 존재

